

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(제68조 제1항관련 별표26)

| 과 제     | 항목                | 내용   |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출발 전 준비 | 차문닫힘 미확인          |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미확인 | 차량 승차 전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전·후·좌·우의 안전을 직접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       | 차량의 출발 때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운전 자세   | 정지 중 기기 작동 미숙     |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(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)를 넣고 브레이크 페달(수동변속기의 경우는 클러치 페달 포함)을 밟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대기중 기어미중립         |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(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)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발      | 20초내 미출발          |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 등으로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10초내미시동 주변교통방해    | 엔진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<br>불필요하게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<br>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엔진정지              | 기기 및 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또는 엔진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급조작·급출발           |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및 페달의 급조작·급출발하는 경우   |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심한진동              | 기기 및 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신호안함              |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신호중지              |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중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신호계속              |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기의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시동장치 조작 미숙        |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가속 및 속도 유지        | 속도낮음   |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아 가속이 부적절한 경우 |
| 속도유지불능  |                   |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속 불가   |                   | 교통상황에 따른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않은 경우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동 및 정지 |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       |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(자동변속기의 경우 정지하기 전에 미리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변속레버를 중립에 둘 때)<br>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<br>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 |   |
|                 | 제동방법 미흡     |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<br>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<br>경우   | 5 |
|                 | 정지 때 미제동    |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<br>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(자동변속기의 경우는<br>브레이크 페달을 느슨하게 밟거나 밟고 있지 않는<br>경우)  | 5 |
|                 | 급브레이크사용     |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<br>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<br>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 | 7 |
| 조향              | 핸들조작미숙 또는불량 | 1)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<br>2)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<br>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<br>3)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<br>4)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<br>5)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<br>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<br>6)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  | 7 |
| 차체<br>감각<br>(2) | 우측안전미확인     | 1)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<br>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<br>출발시키지 않은 경우<br>2)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<br>옆의 안전(사각)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| 7 |
|                 | 1미터간격 미유지   |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, 주·정차 차량, 건조물, 그<br>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<br>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 | 7 |
| 통행<br>구분        | 지정차로 준수위반   |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(전용차로가<br>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<br>제외한다)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그<br>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때  | 7 |
|                 | 앞지르기방법등위반   | 1)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<br>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<br>경우<br>2)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<br>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<br>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<br>3)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<br>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<br>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<br>4)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<br>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| 7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<p>5)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</p> <p>6)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</p> <p>7)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(이륜차는 제외한다)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</p> <p>가) 도로의 구부러진 곳, 오르막길의 정상부근, 급한 내리막길</p> <p>나) 교차로, 터널 안 또는 다리 위</p> <p>다)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</p> <p>라)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</p> |    |
|          | 끼어들기금지           | <p>1)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2)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</p>  | 7  |
|          | 차로유지미숙           | <p>1)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</p> <p>2)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</p> <p>3)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</p>  | 5  |
| 진로<br>변경 | 진로변경 때 안전미확인     |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(유턴을 포함한다)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| 10 |
|          |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      |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 30미터전미신호    |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신호 미유지       |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     |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과다           |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| <p>1) 교차로, 횡단보도 등의 직전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</p> <p>2) 유턴할 수 있는 구간과 중앙선을 걸쳐서 유턴한 경우</p>  | 7  |
|          | 진로변경미숙           | <p>1)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</p> <p>2)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</p>   | 7  |
| 교차로      | 서행위반             | 다음의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 | 10 |

|      |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
| 통행 등 |               | 가)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경우<br>나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<br>다)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<br>라) 좌·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<br>마)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  |   |
|      | 일시정지위반        | 다음의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<br>가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<br>나)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 | 10  |
|      | 교차로진입통행위반     |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,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  | 7   |
|      | 신호차 방해        | 교차로에서 좌·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 | 7   |
|      | 꼬리 물기         |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)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 | 7   |
|      | 신호없는교차로 양보불이행 | 1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<br>2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<br>3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| 7   |
|      |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위반 | 1) 횡단보도예고표시(시행규칙 별표6 5. 노면표시 529)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<br>2)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  | 10  |
|      | 주행 종료         |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<br>종료엔진미정지   |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<br>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|

|  |             |   |   |
|--|-------------|---|---|
|  | 종료주차확인기어미작동 | 시험종료 후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(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때) | 5 |
|--|-------------|---|---|